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정환 의원 외 14명
- 나. 의안번호: 제3030호
- 다. 발의일자: 2022. 1. 1.
- 라. 회부일자: 2022. 1. 25.

### 2. 제 안 사 유

-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저공해 조치 비율이 낮은 수도권 외 차량의 적극적인 운행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포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3. 주 요 내 용

- 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 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안 부칙 신설).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현재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21.12월 ~ '22.3월)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계획(서울특별시, '21. 11월)'에 규정되어 있음.

###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항목		내용
제한기간 및 시간		'21.12.1.~'22.3.31/평일 06~21시(토·일·공휴일 제외)
대상차량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약 100 만대
제외차량	법정제외 <sup>A</sup>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합의제외 <sup>B</sup>	장착불가 차량 중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조건부제외 <sup>C</sup>	수도권외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으나, '22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한 차량의 경우 과태료 면제
단속 방법 및 지역		시 전역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해 실시간 단속
위반시 조치		과태료 10만원 부과 하루 최대 10만원, 운행제한 기간 중 반복 부과 가능

A: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호~제8호

B: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9호

C: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시행

-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저감조치<sup>1)</sup> 발령 시에도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제한 위반 시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이와 반대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0조제3항과 같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중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바로잡아 업무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안 부칙 제2조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이외의 자동차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임. 이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과태료 부과면제 등의 별칙 규정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협의를 근거로 특례 조치를 시행<sup>2)</sup>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부칙 제2조>

**제2조(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의2제1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를 말한다)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발령됨.
    - 당일 PM-2.5 평균 농도가  $50\mu\text{g}/\text{m}^3$  초과,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mu\text{g}/\text{m}^3$  초과 예측
    - 당일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mu\text{g}/\text{m}^3$  초과 예측
    - 다음날 평균 농도가  $75\mu\text{g}/\text{m}^3$  초과 예측
  - 2)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일: 2022년 1월 1일